

성남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2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2004. 1. 27.
제 출 자 김철홍 의원 등 10인

☐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(2003. 12. 18)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
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려는 것임.

☐ 주요골자

- 기초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를 월550,000원에서
월900,000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200,000원을 지급할 수
있도록 함(안 제2조제2항)

성남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성남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매월550,000원”을 “매월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 900,000원과 보조활동비 200,0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. 1. 1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2조(회기수당 지급) ①(생 략)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매월 <u>550,000원</u> 으로 하고, 성남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 기준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최초 임용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	제2조(회기수당 지급)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의정활동자료수집 · 연구비 900,000원과</u> <u>보조활동비 200,000원</u> ----- ----- -----